

【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추 가 경 정 예 산 안 】

일 반 회 계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고 용 보 험 기 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2025. 6.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I.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기본방향	1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2
3.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5
(1) 총괄 현황	5
(2) 세부사업별 현황	6
II. 검토의견	9
[고용정책실]	9
(1) 취약계층취업촉진(일반회계, 1070-300)	9
< 채용박람회 개최 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1
(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일반회계, 1231-300)	15
< 목표지원인원의 합리적이고 면밀한 추계 필요 >	18
(3)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회계, 1234-300)	24
< 청년층의 참여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27
(4) 구직급여(고용보험기금, 1280-350)	32
< 실업급여제정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필요 >	32

[통합고용정책국]	38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일반회계, 1339-301)	38
< 면밀한 수요예측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기할 필요 >	40
 [직업능력정책국]	44
(1)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회계, 1131-300)	44
<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45
(2) 숙련기술장려사업(일반회계, 1134-317)	50
<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방지 및 합리적인 예산 편성 필요 >	50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고용보험기금, 1153-350)	54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규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시행 노력 필요 >	55
 [노동정책실]	58
(1)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임금채권보장기금, 3054-304)	58
< 체불사업주 융자 활성화 필요 및 융자금 회수 노력 강화 필요 >	61
 [산업안전보건본부]	65
(1) 진폐위로금(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131-300)	65
< 법원 판결에 따른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신속히 지급할 필요 >	67
(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70
< 건강일터조성지원 : 국회가 의결한 바에 따른 정확한 집행과 추가 경정예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신속한 집행 필요 >	71

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기본방향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두축을 중심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0.5조원(세출 20.2조원, 세입 10.3조원)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❶“속도”, ❷“실물 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 그리고 ❸“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한 효율성” 중심 편성임.

첫째,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함.

둘째, 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 실물 경기와 소상공인, 사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발굴함.

셋째, 맞춤형 사업설계, 지출 구조조정, 세입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함.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❶경기 진작과 ❷민생 안정 중심으로 편성함.

첫째,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①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여,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할 계획임.

②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2조 7천억원 편성함.

③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 확산에 2천억원을 편성함 .

둘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원을 편성함.

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편성함.

②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천 명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 구축 예산 1조 6천억원을 편성함.

③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 편성함.

.

【 참고자료 】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기본 방향	총 30.5조원 (세출 20.2조원 + 세입 10.3조원)	
	◇ ①경기진작(소비·투자 촉진)과, ②민생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 도모	
주 요 내 용	① 경기 진작	15.2조원
	▶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② 민생 안정	5.0조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원
	▶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원
	③ 세입 경정	10.3조원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0.3조원

【 참고자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조달 구조

구 분	비고
❶ 지출구조조정 5.3조원	추경재원 30.5조원
❷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❸ 외평채 조정 3.0조원	
❹ 국채 발행 19.8조원	

3.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총괄 현황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규모는 1조 5,837억원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125억원(4.1%) 증액 편성되었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450억원(7.1%)이 증액 편성됨.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용보험기금은 1조 3,030억원(7.3%) 증액,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150억원(0.1%) 증액, 임금채권보장기금은 81억원(1.0%) 증액 편성됨.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단위: 억원, %)

회계·기금별	'24년	'25년			증감 (B-A)	증감율 (%)
	본예산	본예산	1회추경 (A)	2회추경안 (B)		
▪ 총지출(a+b)	336,825	353,452	356,255	372,092	15,837	4.4
－ 예산지출(a)	58,151	57,549	58,146	60,722	2,575	4.4
· 일반회계	51,306	51,469	51,766	53,891	2,125	4.1
· 특별회계	6,845	6,080	6,380	6,831	450	7.1
－ 기금지출(b)*	278,674	295,903	298,109	311,370	13,261	4.4
· 고용보험	164,058	178,066	178,219	191,249	13,030	7.3
· 산재보험	98,222	100,176	100,242	100,392	150	0.1
· 임금채권	5,431	6,285	7,793	7,875	81	1.0

* 기금 지출 총액은 추경 대상이 아닌 장애인고용기금, 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된 것임.

(2) 세부사업별 현황

고용노동부는 ①고용안전망 강화, ②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③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지원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

(단위: 억원)

주요 내용	일반회계	예특회계	기금
고용안전망	①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		①구직급여(+12,929억)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①내일배움카드(일반) (+160억) ②취약계층취업촉진 (+20억)		①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101억)
민생회복지원	①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128억) ②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258억)	①진폐위로금(+450 억)	①체불청산지원용자 (+81억) ②클린사업장조성지원 (+150억)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등 2개 사업에 1조 4,581억원을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 ①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 증가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 위한 예산 1조 2,929억원을.

②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 확대 및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 신설을 위해 1,652억원을 편성함.

둘째,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내일배움카드(일반) 등 3개 사업에 281억원을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 ①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예산 160억원을, ②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 위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 예산 20억을, ③청년 대상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훈련 확대 예산 101억을 증액 편성함.

셋째,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용자 등 5개 사업에 1,067억원을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 ①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예산 81억을, ②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예산 128억을, ③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진폐근로자에게 위로금 차액 지급을 위한 예산 450억을, ④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258억을, ⑤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장치 지원 확대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증액 사업내역]

(단위: 억원)

연번	사 업 명	'25년		주 요 내 용
		본예산	2차추경 (순증)	
	① 고용안전망 강화			
1	구직급여	109,171	+12,929	▪ 지원 확대(+18.7만명)
2	국민취업지원제도	8,457	+1,652	▪ 지원 확대(+5.5만명)
	②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3	내일배움카드(일반)	5,802	+160	▪ 일반고 특화 지원 확대(1,820명)
4	취약계층취업촉진	92	+20	▪ 5개 권역 취업박람회 개최
5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192	+101	▪ 공동훈련센터(+5개소) ▪ 대중소상생아카데미(+50개소)
	③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			
6	체불청산지원용자	704	+81	▪ 피해근로자 대출 추가지원
7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218	+128	▪ 특고 등 사각지대 지원 확대
8	진폐위로금	837	+450	▪ 진폐근로자 위로금 차액 지원
9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851	+258	▪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지원 확대
1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818	+150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Ⅱ. 검토의견

[고용정책실]

(1) 취약계층취업촉진(일반회계, 1070-300)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2006~, 직접)은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심리안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 및 (재)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91억 9,900만원 대비 20억원(21.7%) 증액된 111억 9,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예산	본예산 (A)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안 (B)		
■ 취약계층취업촉진	6,185	9,199	9,199	11,199	2,000	21.7
· 지역·산업 특화 취업박람회	-	-	-	2,000	2,000	순증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1,920	3,817	3,817	3,817	-	-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운영	2,791	3,908	3,908	3,908	-	-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직접운영	1,474	1,474	1,474	1,474	-	-

* 자료: 고용노동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에 편성된 사업은 “권역별 지역·산업 특화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 우려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자치단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별 여건에 맞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임.

[권역별 지역·산업 특화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안]

구분	세부 사항								
추진 방향	중앙-지방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의 산업 생태계에 맞는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미스매치 해소 및 지역 고용시장 활력 제고 ① 중앙·자치단체, 지역 금융권, 유관기관(대학일자리+센터 등) 다자 협력 추진 * (고용노동부) 예산, 프로그램 등 제공, (자치단체) 구인수요(기업) 발굴 등 지역 인프라 제공 ② 비수도권 중심으로 광역(5개 이상) 단위 우선 개최 ③ 청년 구직자 중심으로 지역 우수기업과 일자리 매칭 주력 ④ 구직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정보 제공 ⑤ SNS 이벤트, 청년리더 특강 등 홍보 효과 극대화 → 지역 고용시장 활력 UP								
추경안	20억원(5개 권역, 각 4억원)								
추진 일정	<table><tr><td>7월</td><td>8~9월</td><td>9~11월</td><td>12월</td></tr><tr><td>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달 (고용노동부)</td><td>사업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계약 (지역고용센터)</td><td>- 사업 운영 (수탁기관) - 지도·점검 (지역고용센터)</td><td>- 결과보고 및 정 산 (지역고용센터) - 사업평가 (고용노동부)</td></tr></table>	7월	8~9월	9~11월	12월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달 (고용노동부)	사업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계약 (지역고용센터)	- 사업 운영 (수탁기관) - 지도·점검 (지역고용센터)	- 결과보고 및 정 산 (지역고용센터) -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7월	8~9월	9~11월	12월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달 (고용노동부)	사업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계약 (지역고용센터)	- 사업 운영 (수탁기관) - 지도·점검 (지역고용센터)	- 결과보고 및 정 산 (지역고용센터) -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 자료: 고용노동부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절차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강원·경상·전라·충청 등 권역별 자치단체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5개 권역에 각각 4억원을 지원하며, 채용박람회는 해당 권역의 지역고용센터 주관 하에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될 예정임.

1)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과 40~50대 중장년층, 제조업 등 핵심 고용계층의 일자리가 감소(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변동추이: 청년층 3.9%, 40~59세 0.8%, 제조업 1.5% 감소)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인구가 전년동월 대비 56,000명 증가하였음.

〈 채용박람회 개최 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과거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의 추진 이력을 살펴보면, 2023년 이전까지는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왔으나 예산액은 매년 감소되었는데, 이는 각 지역마다 차별성 없이 유사한 박람회가 행사성 사업으로 중복 추진되면서 채용박람회의 참여기업 채용성과가 부진하다는 국회 지적²⁾에 따른 것임.

[연도별 취약계층취업지원 채용박람회 예산 내역]

회계연도	예산내역
2018년	예산: 1,478백만원 - 일반(750백만원) : 15회 × 50백만원 - 테마중심(700백만원) : 7회 × 100백만원 - 제주도(28백만원) : 1회 × 28백만원
2019년	예산: 518백만원 - 일반(200백만원) : 4회 × 50백만원 - 테마중심(290백만원) : (3회 × 100백만원) - 10백만원 - 제주도(28백만원) : 1회 × 28백만원
2020년	예산: 478백만원 - 일반(150백만원) : 3회 × 50백만원 - 소규모(300백만원) : 15회 × 20백만원 - 제주도(28백만원) : 1회 × 28백만원
2021년	예산: 378백만원 - 일반(150백만원) : 3회 × 50백만원 - 소규모(200백만원) : 10회 × 20백만원 - 제주도(28백만원) : 1회 × 28백만원
2022년	예산: 340백만원 - 일반(135백만원) : 3회 × 45백만원 - 소규모(181백만원) : 10회 × 18.1백만원 - 제주도(24백만원) : 1회 × 24백만원
2023년	예산: 274백만원 - 일반(150백만원) : 3회 × 50백만원 - 소규모(100백만원) : 5회 × 20백만원 - 제주도(24백만원) : 1회 × 24백만원

* 주: 2024년 이후에는 채용박람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 자료: 고용노동부

2) 「2016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국회예산정책처, 2017. 8.

일자리·취업 문제는 지역 내 주요 현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 내 관계 기관은 이미 지역 및 산업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박람회, 채용박람회, 만남의 날 등 다양한 채용행사를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있고, 실제 2025년 9월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예정된 지역별 채용박람회는 약 18건으로 파악되고 있음.

[2025년 9월 이후 개최 예정 채용박람회]

권역	주최기관	행사명	참가 기업수 (개소)	개최시기
서울	북부권역새일센터	2025 서울우면업페어(가칭)	50	9. 9.
경기	수원시	수원시 일자리 박람회(하반기)	50	10. 28.
	용인시	용인시 일자리박람회	50	10월 중
	안산시	2025 안산 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	50	9. 25.
	시흥시	2025 K-시흥 채용박람회	50	10월 중
경상	해수부/해군	2025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100	9.4.
	부산시	2025 부산 잡(JOB)페스티벌	150	10. 27.
	경상남도	2025년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 박람회	100	9.2.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5 대구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	65	9. 26.~27.
	경상북도/포항시	2025 포항취업박람회 (가칭)	50	10. 29.
전라	전남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 전남대학교 JOB FESTA	50	10. 30.
	완주군	2025 완주군 일자리박람회	100	9. 4.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전북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62	9. 9.
	전라남도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	50	9월 하순
충청	대전시	청년 일자리 채용박람회	50	9. 30.
	대전시	중장년 일자리 채용 박람회	50	10.29(예정)
	충청북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5년 충청북도 취업박람회	70	9. 25.
	충남경제진흥원	(가칭) 미래로 일자리 박람회	80	9. 23.

*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지역 중심 행사 외에도 스포츠산업 채용박람회, 방위사업 채용정보박람회 등 산업별 특화 채용행사 및 민간 채용 플랫폼이 주관하는 박람회도 운영되고 있고, 최근 전통적인 오프라인 박람회를 넘어 비대면 온라인 채용관, 기업 현장 체험 중심의 잡투어, 직무 이해를 돕는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의 채용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사업성과가 저조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박람회를 개최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동 사업이 2023년 이전에 추진된 채용박람회 개최 사업과 차별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추정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추진상의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채용박람회 등 채용행사는 지역산업·고용 문제의 현장 대응 필요성이 높다는 점, 대기업보다는 각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측면³⁾이 있는 점, 지역 특성 반영 및 지역 내 협업을 통한 성과제고가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일선 지역기관이 주관하여 지역기관과 협업하여 개최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3) 대기업은 주로 공채 시스템을 통해 구인하기 때문에 채용박람회를 주로 채용정보 제공이나 기업 홍보행사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평소 구직자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채용행사를 통해 구직자와 직접 접촉하며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등 인식개선 및 인력 매칭 해소를 도모하는 측면이 강함.

따라서, 동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마련 등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일반회계, 1231-300)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2012년~, 직접)은 소규모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고 함)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이 동 사업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8,851억 3,000만원 대비 257억 5,000만원(2.9%) 증액된 9,108억 8,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837,516	885,130	885,130	910,880	25,750	2.9
·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836,243	882,899	882,899	907,899	25,000	2.8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1,273	2,231	2,231	2,981	750	33.6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소규모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음.

이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0년 12월부터는 예술인, 2021년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 2022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등 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2022년 7월부터는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도 동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확대 적용 대상]

적용 시기	확대 적용 대상
2020. 12.	예술인
2021. 7.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⑦ 방문판매원 ⑧ 화물차주 ⑨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⑩ 방과후학교 강사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022. 1.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 ① 퀵서비스 기사 ② 대리운전 기사
2022. 6.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
2022. 7.	노무제공자 5개 직종 ①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②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기술자 ③ 관광통역안내사 ④ 골프장 캐디 ⑤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지원대상별 지원요건 및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면서 월 평균보수(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월 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와 전년도 종합소득 요건은 근로자와 동일하고, 요건을 갖추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음.

마지막으로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기관에 고용되어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면 사업주와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⁴⁾.

4) 단, 2025년 가입자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됨.²

[지원대상별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구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가사근로자
지 원 요 건	사업 규모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	사업규모와 무관	사업규모와 무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단,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 지원 제외)
	보수 수준	월 평균보수(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후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 관련 계약 체결 이후 지급된 월보수액 또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270만원 미만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재산, 소득 수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좌 동)	(좌 동)	(좌 동)
지원수준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예술인 및 그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 보험료의 80%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 보험료의 80%	가사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좌 동)	(좌 동)	(좌 동)

< 목표지원인원의 합리적이고 면밀한 추계 필요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대상별로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임금 상승을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내역]

구분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u>141,958백만원</u> =419,951명×172만원×2.05%×80%×12개월	<u>149,967백만원</u> =434,090명×176만원×2.05%×80%×12개월
	국민연금	<u>687,611백만원</u> =439,916명×181만원×9%×12개월	<u>700,613백만원</u> =445,965명×185만원×9%×80%×12개월
예술인	고용보험	(10인 미만 사업장) <u>359백만원</u> =2,210명×105.6만원×1.6%×80%×12개월	(10인 미만 사업장) <u>396백만원</u> =2,438명×105.6만원×1.6%×80%×12개월
		(10인 이상 사업장) <u>42백만원</u> =520명×104.7만원×0.8%×80%×12개월	(10인 이상 사업장) 본예산과 동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10인 미만 사업장) <u>3,460백만원</u> =13,475명×167만원×1.6%×80%×12개월	(10인 미만 사업장) <u>4,638백만원</u> =18,059명×167만원×1.6%×80%×12개월
		(10인 이상 사업장) <u>13,436백만원</u> =106,934명×163.5만원×0.8%×80%×12개월	(10인 이상 사업장) <u>16,210백만원</u> =129,017명×163.5만원×0.8%×80%×12개월
가사근로자	합계	<u>1,596백만원</u>	<u>2,346백만원</u>
	고용보험	기존 <u>950명</u> ×1,230,000원×1.64%×12개월	기존 <u>1,525명</u> ×1,230,000원×1.64%×12개월
		외국인 <u>300명</u> ×1,230,000원×1.64%×12개월	외국인 <u>300명</u> ×1,230,000원×1.64%×12개월
		'25 신규 <u>140명</u> ×1,230,000원×7.2%*×6개월	'25 신규 <u>140명</u> ×1,230,000원×7.2%*×6개월
	국민연금	'25 신규 <u>140명</u> ×1,230,000원×3.6%**×6개월	'25 신규 <u>140명</u> ×1,230,000원×3.6%**×6개월
		*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사업장 지원	*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사업장 지원
		**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지원	**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지원
	국민연금	기존 <u>950명</u> ×1,230,000원×7.2%×12개월	기존 <u>1,525명</u> ×1,230,000원×7.2%×12개월
		'25 신규 <u>335명</u> ×1,230,000원×7.2%×6개월 +단수조정 650,440원	'25 신규 <u>335명</u> ×1,230,000원×7.2%×6개월 +단수조정 399,640원

먼저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대하여 지원인원을 419,951명에서 434,090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임금을 172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민연금에 대하여 지원인원을 433,916명에서 445,965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임금을 181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025년 1월 1,517만 4천명에서 같은 해 5월 1,558만명으로 2.7% 가량 증가하였고, 국민연

금 가입자 수(월 소득 270만원 미만)도 2025년 1월 579만 9천명에서 5월 582만 9천명으로 0.5% 가량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가할 예상 지원자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입장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2024년 대비 2025년 최저임금의 상승률 1.7%만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은 172만원, 국민연금은 181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25년 1~4월 실제 월 평균임금은 고용보험이 175만 5천원, 국민연금이 185만 1천원으로 각각 2%, 2.9%씩 증가하여 이를 반영했다는 입장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매년 사업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된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여 지원인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함.

마지막으로, 가사근로자의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이 증가하고, 인증 기관에 종사하는 가사근로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본예산 편성 인원보다 많은 가사근로자가 동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실제로 아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월별 지원 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면, 상용근로자의 1~4월 평균 지원인원은 2025년이 842,916명으로 2024년 884,947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1~4월 평균 지원금액은 2025년이 803억 600만원으로 2024년 716억 4,900만원에 비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1~4월 평균 지원인원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증가(예술인: 2,535명→2,720명→2,839명, 노무제공자: 15,613명→120,409명→147,077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23~2025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월별 지원 실적]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평균 (1~4월)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2023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294,283	7,646	333,322	8,883	362,191	9,774	382,371	10,991	343,042	9,324
		국민연금	380,979	45,558	405,192	50,265	424,867	53,769	428,555	54,584	409,898	51,044
		소계	675,262	53,204	738,514	59,148	787,058	63,543	810,926	65,575	752,940	752,94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87,655	823	86,476	815	57,046	515	70,494	690	75,418	711
		국민연금	624	55	4,794	529	3,486	248	839	63	2,436	224
		소계	88,279	878	91,270	1,344	60,532	763	71,333	753	77,854	935
	예술인	고용보험	2,978	32	2,534	34	2,127	32	2,502	34	2,535	33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10,213	281	9,973	283	11,559	299	30,708	599	15,613	366
	합계		776,732	54,395	842,291	60,809	861,276	64,637	915,469	66,961	848,942	61,701
2024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430,555	11,495	427,086	11,405	436,175	12,230	442,657	13,254	434,118	12,096
		국민연금	455,097	59,456	444,295	58,466	451,010	59,899	452,913	60,392	450,829	59,553
		소계	885,652	70,951	871,381	69,871	887,185	72,129	895,570	73,646	884,947	71,649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93,029	909	92,706	912	87,545	861	84,531	861	89,453	886
		국민연금	147	13	3,155	312	3,683	272	816	68	1,950	166
		소계	93,176	922	95,861	1,224	91,228	1,133	85,347	929	91,403	1,052
	예술인	고용보험	3,432	40	2,649	37	2,521	35	2,278	32	2,720	3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115,188	1,471	118,501	1,541	118,969	1,546	128,979	1,723	120,409	1,570
	합계		1,097,448	73,384	1,088,332	72,673	1,099,903	74,843	1,112,174	76,330	1,099,479	74,308
2025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437,084	24,147	408,449	11,023	415,277	11,365	417,420	12,651	419,558	14,797
		국민연금	446,531	97,160	418,718	55,202	415,264	54,953	412,918	54,721	423,358	65,509
		소계	883,615	121,307	827,167	66,225	830,541	66,318	830,338	67,372	842,916	80,306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88,854	861	93,985	959	74,268	726	83,806	900	85,228	862
		국민연금	79	5	2,293	199	1,752	141	344	26	1,117	93
		소계	88,933	866	96,278	1,158	76,020	867	84,150	926	86,345	954
	예술인	고용보험	2,965	35	3,315	37	2,312	30	2,765	33	2,839	34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148,606	1,958	143,753	1,893	146,184	1,868	149,763	1,972	147,077	1,923
	합계		1,124,119	124,166	1,070,513	69,313	1,055,057	69,083	1,067,016	70,303	1,079,177	83,216

* 자료: 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은 2022년 35개소에서 2025년 3월 120개소로 약 240% 증가하였고,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가사근로자는 2022년 370명에서 2025년 3월 3,836명으로 약 937% 증가했으며, 1~5월 평균 지원인원도 2023년 507명, 2024년 1,522명, 2025년 3,93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과 그 기관 종사자 수]

(단위: 개소, 명)

해당년도	2022	2023	2024	2025.3
기관수	35	88	122	120
근로자수	370	1,190	3,607	3,836

* 근로자 수의 경우 매 분기말 조사자료로 사회보험료 지원인원과 상이함.

** 자료: 고용노동부

[2023~2025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가사근로자 지원 인원]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월평균 (1~5월)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2023	가사 근로자	고용보험	294	5	297	6	310	6	309	6	264	6	1,474	29	295	6
		국민연금	195	18	222	21	233	22	219	21	190	19	1,059	101	212	20
		소계	489	23	519	27	543	28	528	27	454	24	2,533	130	507	26
2024	가사 근로자	고용보험	1,001	20	893	20	1,132	23	1,010	21	863	20	4,899	105	980	21
		국민연금	553	60	542	59	520	56	528	57	566	61	2,709	293	542	59
		소계	1,554	80	1,435	79	1,652	79	1,538	79	1,429	81	7,608	398	1,522	80
2025	가사 근로자	고용보험	2,868	61	2,690	60	2,315	51	2,936	60	2,689	60	13,498	293	2,700	59
		국민연금	1,341	143	1,295	140	1,227	133	1,195	128	1,134	122	6,192	668	1,238	134
		소계	4,209	205	3,985	200	3,542	185	4,131	189	3,823	183	19,690	961	3,938	192

* 월별 정산보고 실적으로 작성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제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가하는 사업 참여자를 반영하여 지원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수를 합리적이고 면밀하게 추계하여 향후 적절한 수준의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회계, 1234-300)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2021년~, 직접)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8,457억 900만원 대비 1,651억 5,600만원(19.5%) 증액된 1조 108억 6,5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 국민취업지원제도	942,515	845,709	845,709	1,010,865	165,156	19.5
· I 유형	762,373	714,087	714,087	853,100	139,013	19.5
· II 유형	103,193	130,657	130,657	156,800	26,143	20
· 일경험 프로그램	75,984	-	-	-	-	-
· 전산망 강화	965	965	965	965	-	-

*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0년 6월 9일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1. 1. 1.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임.

동 사업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결합된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는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I 유형은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구직자 중 소득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세부 유형을 구분하여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역사업임.

II유형은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35세 이상 69세 이하의 중장년층 및 기초연금 수급자 등 특정계층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취업활동비용⁶⁾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5) 특정계층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가구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건설 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구직단념청년, 산재로 장애를 입은 자 등이 포함됨

6) 취업활동비용은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②훈련참여지원수당, ③참여장려수당으로 구분됨.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5~25만원이 지급되고, ②훈련참여지원수당은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씩 월 최대 284,000원이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되며, ③참여장려수당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수급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 차원에서 월 1회 2만원을 최대 3회에 한하여 지급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대상 및 요건 비교]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 발 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I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청년층		15~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특정계층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또한 I 유형 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그들의 생계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월 최대 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마찬가지로 최대 6개월 지급)의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I·II 유형 사업 참여자의 취업 성공 후 근속 유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창업 후 12개월 동안 근속을 유지하면 총 15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함.

[부양가족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의 개요]

구 분	부양가족수당	취업성공수당
대상자	I 유형 사업 참여자	I·II유형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II유형 중 특정계층참여자
지급요건	가구원 중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다음의 ①소득요건과 ②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소득요건: 신청 당시의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II유형 특정계층은 소득 무관 ②근로조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단, 주 30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자에게도 지급) (창업) 사업자 등록 + 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 및 매출 발생 등 (노무제공자)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지급수준	최대 6개월간 부양가족 1명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지급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년 근속 시 100만원 지급

〈 청년층의 참여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 유형 지원 인원 확대를 위하여 1,390억 1,300만원을, II유형 지원 인원 확대 및 건설업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26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내역]

□ ('25) 845,709백만원 → ('25추경) 1,010,865백만원, 165,156백만원 증액 * (목표인원) 30.5만명 → 36만명(5.5만명)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25) 714,087백만원 → ('25추경) 853,100백만원, 139,013백만원 증액 * (목표인원) 21.5 → 24.2만명(+2.7만명) - (산출) 구직촉진수당 117,705백만원(50만원×5.4회×43,595명) 부양가족수당 4,496백만원(15만원×5.4회×5,550명) 취업성공수당 16,812백만원(62.5만원×26,900명)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25) 130,657백만원 → ('25추경) 156,800백만원, 26,143백만원 증액 * (목표인원) 9 → 11.8만명(+2.8만명(청년 1만명, 중장년 0.8만명, 건설업 퇴직자 1만명)) - (산출) ① 청년 7,532백만원 1단계 참여수당 170,000원*10,000명*0.94(IAP 수립률)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284,000원*10,000명*0.4(훈련수당 수급비율)*1.5개월(평균수급횟수) 민간위탁비 45만원*10,000명*0.94(IAP수립률) ② 중장년 6,401백만원 1단계 참여수당 170,000원*8,000명*0.94(IAP 수립률) 2단계 참여수당 284,000원*8,000명*0.4(훈련수당 수급비율)*1.5개월(평균수급횟수) 민간위탁비 50만원*8,000명*0.94(IAP수립률) ③ 건설업 퇴직자 12,210백만원 가) 1단계 참여수당 190,000원*10,000명*0.94(IAP 수립률) 참여수당 추가 100,000원*10,000명*0.94(IAP 수립률) 나)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2,904백만원 (훈련수당) 284,000원*10,000명*0.4(훈련수당 수급비율)*1.5개월(평균수급횟수) (훈련추가) 200,000원*10,000명*0.4(훈련수당 수급비율)*1.5개월(평균수급횟수) 민간위탁비 6,580백만원(70만원*10,000명*0.94(IAP수립률))

I 유형의 경우 본예산에 더하여 구직촉진수당 45,595명분, 부양가족수당 5,550명분, 취업성공수당 26,900명분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II 유형의 경우 청년층과 중장년층 지원 인원을 각각 10,000명과 8,000명씩 추가하고 건설업 퇴직자 10,000명을 추가 편성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에 대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수급자격 인정자 수가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난 상황이고,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 퇴직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유도하여 재취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실제로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5년 1~5월 수급자격 인정자 수는 I 유형이 114,262명으로 작년 동기 105,593명 대비 8,669명(8.2%) 많고, II 유형이 31,355명으로 작년 동기 26,860명 대비 4,495명(16.7%)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23~2025년 월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현황]

(단위: 명)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평균 (1~5월)
2023	I 유형	15,597	16,712	20,045	19,136	23,727	95,217	19,043
	II 유형	4,726	5,270	6,366	6,051	7,342	29,755	5,951
	계	20,323	21,982	26,411	25,187	31,069	124,972	24,994
2024	I 유형	20,530	16,326	20,078	20,973	27,686	105,593	21,119
	II 유형	5,111	4,406	5,180	5,698	6,465	26,860	5,372
	계	25,641	20,732	25,258	26,671	34,151	132,453	26,491
2025	I 유형	19,521	23,881	26,264	25,847	18,749	114,262	22,852
	II 유형	4,490	5,476	5,858	7,903	7,628	31,355	6,271
	계	24,011	29,357	32,122	33,750	26,377	145,617	29,123

*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5년 4월 건설업의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5만명(△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즉, 늘어나고

있는 사업 참여 수요를 반영하고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건설업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여짐.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4. 4			2025. 3			2025. 4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률
< 전 체 >	28,693	100.0	261	28,589	100.0	193	28,887	100.0	194	0.7
○ 농 림 어 업	1,562	5.4	5	1,309	4.6	-79	1,427	4.9	-134	-8.6
○ 제 조 업	4,521	15.8	100	4,399	15.4	-112	4,397	15.2	-124	-2.7
○ 건 설 업	2,098	7.3	5	1,932	6.8	-185	1,948	6.7	-150	-7.2
○ 도매 및 소매업	3,242	11.3	-39	3,223	11.3	-26	3,239	11.2	-3	-0.1
○ 운수 및 창고업	1,690	5.9	52	1,686	5.9	5	1,716	5.9	27	1.6
○ 숙박 및 음식점업	2,312	8.1	29	2,327	8.1	56	2,313	8.0	1	0.1
○ 정보통신업	1,079	3.8	68	1,151	4.0	61	1,151	4.0	72	6.6
○ 금융 및 보험업	745	2.6	6	798	2.8	65	810	2.8	65	8.8
○ 부 동 산 업	525	1.8	-23	520	1.8	-8	517	1.8	-8	-1.5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02	4.9	45	1,463	5.1	37	1,516	5.2	113	8.1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376	4.8	-66	1,334	4.7	-24	1,346	4.7	-29	-2.1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18	4.6	19	1,388	4.9	87	1,369	4.7	51	3.9
○ 교육 서비스업	1,858	6.5	-49	1,894	6.6	30	1,925	6.7	68	3.6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63	10.3	93	3,129	10.9	212	3,180	11.0	218	7.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536	1.9	15	529	1.9	29	539	1.9	3	0.6
○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126	3.9	-3	1,155	4.0	34	1,153	4.0	27	2.4
○ 기타 ¹⁾	343	1.2	5	353	1.2	11	340	1.2	-3	-0.8

*자료: 통계청, 2025년 4월 고용동향

다만, 유형별 참여 인원을 살펴보면 2025년 5월까지의 II유형 청년층 참여자 수는 18,512명으로 목표 인원인 68,000명의 2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목표달성률이 월 기준[5월 기준 41.7%{(5/12)×100}]에 미치지 못함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II유형 청년층의 참여자를 1만명 추

가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청년층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2~2025 유형별 목표 참여 인원 및 실제 참여 인원]

(단위: 명, %)

유형		연도	참여 인원 (수급자격 인정 인원)		달성률
			목표	실제	
I 유형	요건심사형	2022	250,000	86,233	34.5
		2023	200,000	83,595	41.8
		2024	88,100	88,431	100.4
		2025. 5.	90,000	44,757	49.7
	선발형 비경활	2022	80,000	30,242	37.8
		2023	60,000	28,697	47.8
		2024	20,000	26,690	133.5
		2025. 5.	20,000	14,684	73.4
	선발형 청년특례	2022	170,000	100,495	59.1
		2023	140,000	114,454	81.8
		2024	140,000	134,543	96.1
		2025. 5.	105,000	54,821	52.2
II 유형	특정계층	2022	10,000	12,983	129.8
		2023	20,000	15,029	75.1
		2024	9,870	12,535	127.0
		2025. 5.	12,000	5,679	47.3
	청년층	2022	80,000	37,801	47.3
		2023	40,000	39,709	99.3
		2024	40,000	40,259	100.6
		2025. 5.	68,000	18,512	27.2
	중장년층	2022	10,000	14,046	140.5
		2023	10,000	14,565	145.7
		2024	9,810	12,767	130.1
		2025. 5.	10,000	7,164	71.6

* 자료: 고용노동부

(4) 구직급여(고용보험기금, 1280-35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구직급여’ 사업(1995년~, 직접)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기여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이직자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재 계획액 10조 9,170억 7,400만원 대비 1조 2,929억원(11.8%) 증액된 12조 2,099억 7,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구직급여 사업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B-A)	(B-A)/ A
	당초	수정	당초	제1회 변경 (A)	제2회 변경안 (B)		
■ 구직급여	10,914,396	11,787,793	10,917,074	10,917,074	12,209,974	1,292,900	11.8

* 자료: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계정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필요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예술인,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예술인은 9개월, 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됨.⁷⁾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2,096원(4시간)~64,192원(8시간)임.

7)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지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지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지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지급자격 인정신청일 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지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지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당초 159만 6,106명을 계획하고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했으나, 2025년 5월 말 기준 구직급여 수급 근로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18만 7,208명분에 해당하는 1조 2,9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⁸⁾

[구직급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출 내역(근로자)]

구 분	당초 계획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급자	1,596,106명	1,783,314명 (+187,208명)
1일 지급액	61,560원	61,560원 (변동없음)
지급일	112일	112일 (변동없음)
계획액	10조 9,170억 7,400만원	12조 2,099억 7,400만원 (+1조 2,929억원)

월별 구직급여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5월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의 수는 2025년이 1,096,999명으로 2024년 1,056,522명 대비 40,477명(3.8%) 증가하였고, 동 기간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2025년이 5조 3,666억 3,100만원으로 2024년 5조 39억 9,500만원 대비 3,626억 3,600만원(7.2%) 증가하였음.

8)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만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는 당초 계획과 동일함.

[2024 · 2025년 구직급여 수급자수]

(단위: 명)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순누계)
2024	전체	619,147	630,840	660,178	667,265	651,810	1,065,833
	근로자	614,291	625,577	654,615	661,453	646,080	1,056,522
	예술인	1,980	2,204	2,319	2,380	2,289	3,788
	노무제공자	2,876	3,059	3,244	3,432	3,441	5,513
2025	전체	604,581	673,871	698,390	707,367	675,516	1,106,106
	근로자	600,021	668,768	692,934	701,618	670,048	1,096,999
	예술인	1,511	1,659	1,751	1,829	1,725	3,007
	노무제공자	3,049	3,444	3,705	3,920	3,743	6,096

* 자료: 고용노동부

[2024 · 2025년 구직급여 지급액]

(단위: 백만원)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2024	전체	945,304	968,407	976,367	1,062,120	1,086,473	5,038,670
	근로자	939,154	961,937	969,599	1,054,668	1,078,637	5,003,995
	예술인	2,526	2,622	2,801	3,123	3,038	14,109
	노무제공자	3,624	3,848	3,967	4,328	4,799	20,566
2025	전체	980,996	1,079,659	1,057,925	1,164,762	1,118,252	5,401,594
	근로자	974,775	1,072,835	1,051,070	1,157,125	1,110,826	5,366,631
	예술인	1,941	2,094	2,028	2,299	2,209	10,571
	노무제공자	4,280	4,731	4,827	5,337	5,217	24,392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2024년도 당초 계획액과 유사하게 10조 9,170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2024년도 당초 계획액: 10조 9,143억 9,600만원), 2024년에도 구직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 증가로 11조 7,877조 9,300만원으로 계획액을 자체변경하였음. 2025년도 제2회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구직급여 사업비는 12조 2,099억 7,400만원으로 2024년 수정액인 11조 7,877억 9,300만원 대비 3.6%(4,221억 8,100만원) 증가한 수치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2024년 1~5월 대비 2025년

1~5월 구직급여 수급 근로자 수의 증가율인 3.8%와 유사한 값임.

즉, 현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1조 2,929억원을 추가 편성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상되는 추가 구직급여 수급자 수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구직급여의 재원인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가 2020~2024년 동안 소폭의 흑자와 적자를 번갈아가며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구직급여 지출액 증액 시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가 겨우 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현황(근로자계정)]

(단위: 억 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당초	제1회 기금변경	제2회 기금변경안
총계	수 입	198,358	200,074	187,621	185,409	192,216	218,568	218,568	218,568
	지 출	204,653	210,577	180,647	170,591	186,456	193,113	193,267	206,297
	재정수지	△6,295	△10,503	6,974	14,819	5,759	25,455	25,301	12,271
	적립금	66,996	56,487	63,379	78,196	83,945	109,399	109,246	96,216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계정	수 입	61,884	51,691	51,696	41,238	42,757	47,578	47,578	47,578
	지 출	65,706	66,325	39,182	27,101	34,711	35,325	35,478	35,579
	재정수지	△3,822	△14,634	12,513	14,137	8,046	12,254	12,100	11,999
	적립금	27,800	13,163	25,658	39,794	47,835	60,088	59,940	59,833
실업 급여 계정	수 입	136,287	148,141	135,675	143,879	149,105	170,528	170,528	170,528
	지 출	138,860	144,138	141,325	143,307	151,542	157,586	157,586	170,515
	재정수지	<u>△2,573</u>	<u>4,003</u>	<u>△5,650</u>	<u>573</u>	<u>△2,437</u>	<u>12,941</u>	<u>12,941</u>	<u>12</u>
	적립금	38,666	42,665	36,953	37,525	35,083	48,024	48,029	35,095

*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계정이 별도로 운영되는데 위 표는 근로자계정만 나타냄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은 대량의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한 준비금으로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을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⁹⁾

그러나 2020년부터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액이 급증하여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8조 740억원 차입하였는데,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남아 있는 상환 예정금액은 7조 7,208억원임.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액을 고려하면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는 제2회 기금계획변경안 기준으로 7조 7,196억원 적자(=12억원-7조7,208억원)로,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됨.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자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액 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통합고용정책국]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일반회계, 1339-301)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2019년~, 직접)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의 모성보호 및 생계보전을 위하여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¹⁰⁾를 근거로 함.

동 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 217억 8,900만원 대비 127억 7,200만원(58.6%) 증액된 345억 6,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7,676	21,789	21,789	34,561	12,772	58.6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자영업자(1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비롯하여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근로하거나 고용보험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여성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개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적용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고용보험적용제외	①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비임금근로자		②초단시간근로, 4인 이하 농어업 등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1인 사업자)

출산급여 대상

- (지원수준)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지급 기준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요건확인	
근로자	①유형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②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사업주 확인서 ·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 확인서	· 동거친족 여부 확인
1인 사업자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 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세금신고 확인서(국세청 정보), 필요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 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⑤유형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 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⑥유형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면밀한 수요예측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기할 필요 〉

본 추경안은 최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인원의 증가¹¹⁾ 등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출산급여 지원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2025년 예상 예산부족분 127억 7,200만원(인원 기준 8,515명)을 증액하였음.

- 2025년 예상 예산부족분은 2024년 월평균지원인원(1,156명)¹²⁾에 전년동기(1분기)대비 지원인원 증가율(36.6%)을 적용한 인원(1,579명)에 대해 2025년 6월 이후 매월 150만원씩 지원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본 사업예산 대비 부족한 금액임.¹³⁾

[2025년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제2회 추경안 산출내역]

추경안	산출내역
34,545백 만 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4,103백만원 가. 기존 지원 (17,218백만원) · 11,479명 × 150만원 = 17,218백만원 나. '24년 예산부족분 (4,113백만원) · 2,742명 × 150만원 = 4,113백만원 다. '25년 예상 예산부족분 (12,772백만원) · 8,515명 × 150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58백만원 · 305명 × 150만원 = 458백만원

11) * '22년 10,451명 → '23년 10,492명 → '24년 12,622명 → '25.5월 9,012명

12) '24년 평월(2~7월) 기준 월평균지원인원

13) ○ '25년 예상 예산 부족분 : 12,772백만원* (인원 환산 시 8,515명)

*연간 예상 집행액**(34,561백만원) - 예산액(21,789백만원) = 12,772백만원

1~5월 집행액(17,981백만원) + 6~12월 예상 집행액(16,580백만원)=1,579명*×150만원×7개월)

*** (6~12월 월평균지원인원) '24년 평월(2~7월) 기준 월평균지원인원(1,156명)×지원인원 증가율(1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36.6%) = 1,579명

동 사업은 시행초기 사업의 낮은 인지도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이후 정책 홍보 강화에 따른 사업인지도 확대로 지원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19~2024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37,500	47,208 (21,608) ¹⁴⁾	24,899	12,776	15,572	17,676
집행액	6,524	18,949	17,815	12,775	15,560	17,647
집행률	17.4	39.9 (87.7)	71.5	99.9	99.9	99.8

또한, 2025년도 5월 기준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82.5%에 달하여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바, 출산급여의 적시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지원률· 집행률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인 원	11,784	2,432	1,561	1,608	1,637	1,774	9,012	76.5
예 산	21,789	8,381	2,519	2,382	2,315	2,384	17,981	82.5

그런데, 최근 3년간 지원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을 거의 소진했던 2023년과 2024년의 1월~5월의 지원인원 비율이 6월~12월

14)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예산 이용(472억원→216억원, △256억원)

까지의 지원인원 비율보다 높거나 유사함. 이는 연말 예산 소진의 영향으로 상반기 신청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번 추경안은 동 사업의 2025년 6월 이후 지원인원에 대해 5월까지의 지원인원 9,012명 대비 약 23% 증가한 11,053명을 반영하여 예산부족액을 산출하고 있는바, 상반기에 지원인원 비율이 높은 최근 2개년의 추이에 비취보았을 때 지원인원을 과다계상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2~2025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월별 지원인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1월	848	1,580	1,745	2,432
2월	734	1,130	1,045	1,561
3월	1,099	1,007	1,196	1,608
4월	781	850	970	1,637
5월	1,196	950	1,294	1,774
소계	4,658(45%)	5,517(53%)	6,250(50%)	9,012(45%)
6월	845	854	1,207	1,579 ¹⁵⁾
7월	923	732	1,221	1,579
8월	845	623	734	1,579
9월	717	561	643	1,579
10월	177	533	825	1,579
11월	400	652	659	1,579
12월	1,886	1,020	1,083	1,579
소계	5,793(55%)	4,975(47%)	6,372(50%)	11,053(55%)
총계	10,451	10,492	12,622	20,065

15)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된 월별 예상 지원인원

고용노동부는 2024년 평월(2~7월) 기준 월평균지원인원에 전년동기(1분기) 대비 증가율을 반영한 인원을 2025년 6월 이후 월평균지원인원으로 일괄 반영하여 소요예산예상액을 산출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추경안 편성을 위해 6월 이후 지원인원을 추계하면서 전년도 2월~7월 월평균지원인원¹⁶⁾을 기준으로 지원인원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¹⁷⁾ 보다 정확한 수요산출을 위해서는 하반기 지원인원이 상반기에 비해 저조한 경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지원인원의 증가추세¹⁸⁾로 예산 소진의 속도가 빠르고, 출산여성의 모성보호 및 생계지원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원예산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편성될 필요도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6) 2024년 2월~7월 월평균지원인원은 1,156명으로 2024년 1월~12월 월평균지원인원 1,052명보다 높음.

17) 고용노동부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6월 이후 지원인원을 추계하면서 예산 소진의 영향이 적은 전년도 2월~7월 월평균지원인원을 기준으로 지원인원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함.

18)(전년대비 지원인원 증가율) '22년 Δ9.6% → '23년 0.4% → '24년 20.3% → '25.5월 44.2%

[직업능력정책국]

(1)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회계, 1131-300)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1998년~, 직접)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이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돌봄서비스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5,801억 6,100만원 대비 160억원(2.8%) 증액된 5,961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 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내일배움카드(일반)	584,906	580,161	580,161	596,161	16,000	2.8
·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	498,116	498,116	498,116	-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473,188	478,116	478,116	478,116	-	-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20,000	20,000	20,000	-	-
· 돌봄서비스훈련	35,000	33,100	33,100	33,100	-	-

· 일반고 특화훈련	49,230	45,557	45,557	61,557	16,000	35.1
· 평생크레딧	25,000	-	-	-	-	-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	-	-	-	-	-
·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1,000	900	900	900	-	-
· 운영비 등	1,488	2,488	2,488	2,488	-	-

* 자료: 고용노동부

〈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55억 5,700만원 대비 160억원(35.1%) 증액된 615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A)	2025년 제1회 추경	2025년 제2회 추경안(B)	증감 (B-A)	(B-A)/ A
	본예산	추경					
■ 내일배움카드(일반)	584,906	584,906	580,161	580,161	596,161	16,000	2.8
· 일반고 특화훈련	49,230	49,230	45,557	45,557	61,557	16,000	35.1

* 자료: 고용노동부

동 내역사업은 일반고¹⁹⁾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156~1,300시간 (약 10개월) 범위 내에서 직종별 전공교육, 창의적 체험활동²⁰⁾을 실시하여 참여자에게 훈련비 전액과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함.

동 내역사업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이유는 본예산 편성시 예상 참여인원인 5,180명에 비해 실제로 올해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7,000명에 달하기 때문이고, 이에 초과 인원에 해당하는 1,820명분에 대한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산출 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① 훈련비 35,177,380천원 · 5,180명×6,791천원=35,177,380천원	① 훈련비 47,537,000천원 · 7,000명×6,791천원=47,537,000천원
② 훈련장려금 10,360,000천원 · 5,180명×200천원×10개월=10,360,000천원	② 훈련장려금 천원 · 7,000명×200천원×10개월=14,000,000천원
③ 조정재원 (19,620천원)	③ 조정재원 (20,000천원)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동 내역사업 참여 희망자가 예상보다 더 증가한 이유를 2025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실제로 연도별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06년 출생아 수는 451,759명이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2007년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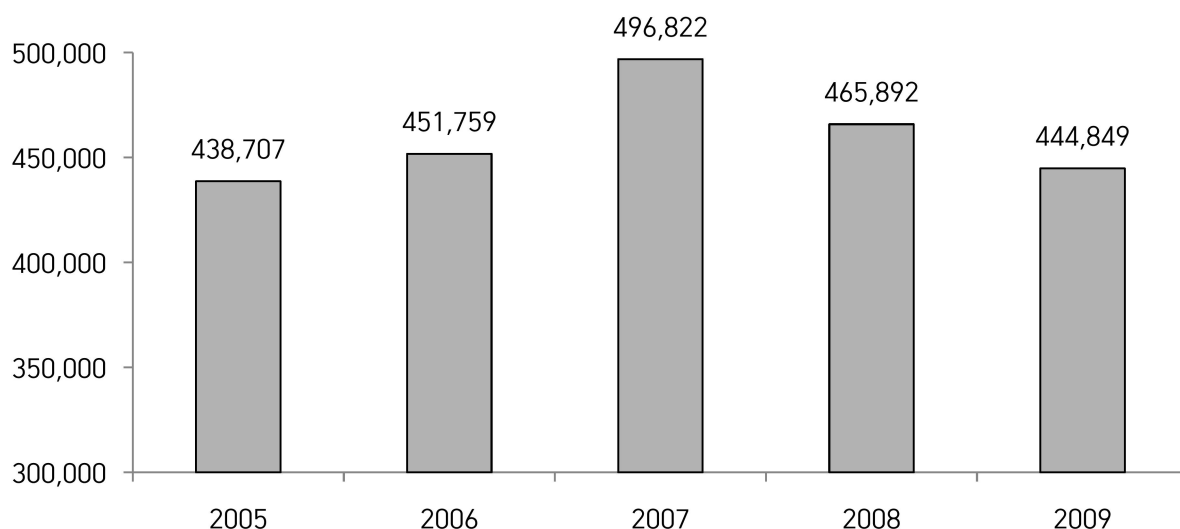
19) 일반고 외에도 자율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대안학교, 학력인정시설에 다니는 학생이나 17~19세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음.

20) 직업기초프로그램, 노동인권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생아 수는 496,822명으로 2006년에 비해 2007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올해 참여 희망 학생이 작년에 비해 급증했음을 유추할 수 있음.

[2005~2009년 출생아 수]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07년의 출생아 수(올해 고등학교 3학년)가 인접 연도 대비 더 많고, 이에 사업 참여 희망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 수요를 충당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짐.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학생의 수료율과 취업률은 각각 89.3~90.9%, 61.7~71%로 나타났으나, 6개월 고용유지율과 1년 고용유지율은 각각 26.9~52.8%, 28.8~38.3% 수준으로 나타남.

[2019~2023년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훈련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참여자 수 ¹⁾	8,332	7,110	6,917	6,815	5,544
중도탈락자 수 ²⁾	831	761	652	788	664
수료자 수 ³⁾	10,456	2,640	10,270	6,009	4,159
취업자 수 ⁴⁾	5,852	1,385	5,623	3,278	1,974
중도탈락률(%) ⁵⁾	10.0	10.7	9.4	11.6	11.9
수료율(%) ⁶⁾	90.9	89.3	90.4	90.4	89.5
취업률(%) ⁷⁾	61.7	63.2	70.4	71.0	68.5
고용유지율(6개월)(%) ⁸⁾	45.1	52.8	48.6	49.4	26.9
고용유지율(1년)(%)	31.0	33.5	33.7	38.3	28.8

* 주 1) 참여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훈련실시인원

2) 중도탈락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중도탈락인원

3) 수료자 수: 훈련종료일 기준, 수료인원

4) 취업자 수: 수료자 기준, 수료 후 취업훈련생 수

5)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참여자 수)×100

6) 수료율(%): [수료자 수/(참여자 수-조기취업훈련생 수)]×100

7) 취업률(%): [수료 후 취업훈련생 수/(수료자 수-훈련 시작 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수료 후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하지 못하는 자)]×100

8) 고용유지율(%) (고용유지자 수/취업자 수)×100

**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전체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6개월 고용유지율과 1년 고용유지율이 각각 59.9~63.4%, 46.9~50% 수준인 것과 대비해 저조한 것임.

[2019~2023년 전체 내일배움카드 사업 훈련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참여자 수 ¹⁾	461,356	718,113	1,054,414	940,067	1,074,941
중도탈락자 수 ²⁾	19,754	72,046	97,345	85,172	94,837
수료자 수 ³⁾	388,092	611,513	925,116	895,927	969,370
취업자 수 ⁴⁾	103,937	153,108	254,579	229,675	223,476
중도탈락률(%) ⁵⁾	4.3	10.0	9.2	9.1	8.8
수료율(%) ⁶⁾	87.7	90.1	91.4	91.5	91.9

취업률(%) ⁷⁾	55.9	54.2	54.1	51.6	49.2
고용유지률(6개월) ⁸⁾	62.9	59.9	61.3	62.6	63.4
고용유지율(1년)	49.9	46.9	47.8	50.0	49.3

* 참고: 내일배움카드(일반), 내일배움카드(고보) 내 K-디지털 기초역량 사업 제외 참여자 기준

** 주 1) 참여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훈련실시인원

2) 중도탈락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중도탈락인원

3) 수료자 수: 훈련종료일 기준, 수료인원

4) 취업자 수: 수료자 기준, 수료 후 취업훈련생 수

5)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참여자 수)×100

6) 수료율(%): [수료자 수/(참여자 수-조기취업훈련생 수)]×100

7) 취업률(%): [수료 후 취업훈련생 수/(수료자 수-훈련 시작 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수료 후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하지 못하는 자)]×100

8) 고용유지율(%) (고용유지자 수/취업자 수)×100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참여 학생의 고용유지율이 다른 내일배움카드 사업 참여자에 비해 고용유지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가 직장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 참여 인원을 확대 편성에 따른 운영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숙련기술장려사업(일반회계, 1134-317)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숙련기술장려사업’(1982년~, 출연)은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숙련기술자가 존중받는 능력 위주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이 ‘숙련기술장려’, ‘기능경기대회’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337억 4,400만원 대비 91억 8,900만원(△27.2%) 감액된 245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숙련기술장려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 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숙련기술장려사업	40,057	33,744	33,744	24,555	△9,189	△27.2
· 숙련기술장려	22,497	19,201	19,201	10,012	△9,189	△47.9
· 기능경기대회	17,560	14,543	14,543	14,543	-	-

* 자료: 고용노동부

〈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방지 및 합리적인 예산 편성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숙련기술장려’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92억 100만원 대비 91억 8,900만원(△47.9%) 감액된 100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숙련기술장려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A)	2025년 제1회 추경	2025년 제2회 추경안(B)	증감 (B-A)	(B-A)/ A
	본예산	추경					
■ 숙련기술장려사업	40,057	40,057	33,744	33,744	24,555	△9,189	△27.2
· 숙련기술장려	22,497	22,497	19,201	19,201	10,012	△9,189	△47.9
- 숙련기술진흥원 추가 건립	12,561	12,561	9,625	9,625	436	△9,189	△95.5

* 자료: 고용노동부

동 내역사업에는 숙련기술진흥원을 추가 건립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숙련기술진흥원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숙련기술을 전수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전문기관임.

현재 숙련기술진흥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1개소가 설립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에 추가로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2023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5년도 본예산에는 96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정부는 공사 기간 조정에 따라 연차별 소요 예산을 조율하기 위하여 2025년도 숙련기술진흥원 추가 건립 소요 예산 96억 2,500만원 중 91억 8,900만원을 감액한 4억 3,600만원만을 편성하였음.

정부가 예산을 대폭 감액한 이유를 살펴보면, 공사 설계는 기본계획,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실시설계 순으로 진행되는데, 당초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대하여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2025년 6월에서야 기본설계와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음.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기간 연장을 협의하여 총사업기간을 당초 2023년~2026년에서 2023년~2028년으로 연장하였음. 이로 인해 착공시기가 2026년 3월로 순연되었고, 공사비로 편성된 86억 2,600만원과 감리비로 편성된 5억 6,300만원, 총 91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함.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총사업 기간을 조정하여 이에 따른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총사업비 조정은 안전시공, 법령 제·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²¹⁾, 총사업 기간 연장

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동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사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소요될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각 사업 단계별 진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과대하게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각 사업 단계별 소요기간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예산 불용과 이월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1)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4조(기본원칙) ① 안전시공, 법령 제·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타당성재조사의 시행 시기별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③·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⑥ (생략)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2항 각 호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고용보험기금, 1153-35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2001년~, 보조)은 대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체 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 상생의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재 계획액 1,192억 2,500만원 대비 101억원(8.5%) 증액된 1,293억 2,5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A
	당초	수정	당초	제1회 변경 (A)	제2회 변경안 (B)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125,000	125,000	119,225	119,225	129,325	10,100	8.5
· 산업맞춤형	71,000	71,000	71,225	71,225	71,225	-	-
· 하이테크형	40,000	40,000	34,000	34,000	38,000	4,000	11.8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12,200	12,200	12,200	12,200	18,300	6,100	50
· 일반용역비	1,800	1,800	1,800	1,800	1,800	-	-

* 자료: 고용노동부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규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시행 노력 필요 〉

동 사업은 크게 ‘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된 내역사업은 ‘하이테크형’과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임.

하이테크형은 첨단산업, 산업전환 분야 등 신기술·신산업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로 ‘K-하이테크 플랫폼’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구분되는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대상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업전환 및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되면 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훈련 시행연차별로 차등하여 최대 총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개발·운영하는 훈련프로그램 중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훈련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는 최소 40시간 이상의 훈련을 진행하게 됨.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의 내용]

구 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목 적	저탄소 등 산업 전환에 따라 산업전환 진행단계 진단, 근로자의 전환 직무분석 등을 통한 직무전환훈련 및 경력재설계 등 지원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도모
훈련대상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재직자
지원내용	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훈련프로그램 운영비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올해 신규 10개소 선정·지원하는 계획에 추가로 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는 데 40억 원을 편성하고,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올해 계획한 100개 외에 50개를 추가로 선정하는 데 61억원을 편성하였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출 내역]

2025년도 당초 계획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①하이테크형(산업전환): 14,000백만원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u>14,000백만원</u> =기존25개소×400백만원 + 신규 5개소×800백만원	①하이테크형(산업전환): 18000백만원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u>18,000백만원</u> (+4,000백만원) =기존25개소×400백만원 + 신규 10개소×800백만원 * (변경) 신규 5개소 추가
②대중소상생 아카데미: <u>12,200백만원</u> · 훈련운영비: 100개 프로그램 × 122백만원	②대중소상생 아카데미: <u>18,300백만원</u> (+6,100백만원) · 훈련운영비: 150개 프로그램 × 122백만원 * (변경) 신규 50개 프로그램 추가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높은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산업

전환 가속화에 따른 직무전환훈련 수혜대상 확대로 중소기업 고용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에 고품질의 장기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훈련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의 경우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고용노동부는 7~8월에 신규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및 신규 훈련프로그램 인증심사·선정을 거쳐 9월부터 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신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로 제한됨.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의 향후 집행 계획]

7~8월	신규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 훈련프로그램 인증심사·선정
9~12월	훈련과정 운영 및 모니터링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훈련프로그램 인증심사·선정 단계에서 신규 훈련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따른 준비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기업에 훈련 운영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노동정책실]

(1)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임금채권보장기금, 3054-304)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2012년~, 융자)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채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임금채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액 703억 5,200만원 대비 81억 2,900만원(11.6%) 증액된 784억 8,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 A
	당초	수정	당초	제1회 변경 (A)	제2회 변경안 (B)		
■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40,190	76,918	70,352	70,352	78,481	8,129	11.6

* 자료: 고용노동부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체불사업주 융자’(이하 ‘사업주융자’)와 ‘체불근로자 융자’(이하 ‘근로자융자’)로 구분됨. 먼저 사업주융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체불액만큼²²⁾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채불 상

22) 사업장 1개소당 1억 5천만원, 근로자당 1천5백만원 한도

태 해소를 도모하는 것임.

근로자용자는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채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채불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채불금액에서 대지급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채불금액²³⁾을 지원하고 있음.

[채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개요]

구분	채불사업주 용자('12.8월~)	채불근로자 용자('21.6.9. 시행)
지원형태	용자	용자
지원대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채불하였으나 채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 (용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채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중인 근로자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가동	①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이상 임금채불 ② 채불확인서 필요
이자율	(담보) 2.2%, (신용) 3.7%	1.5%
용자금액	원칙적으로 근로자 채불액만큼 용자 (사업장 1개소당 1억5천만원, 근로자당 1천5백만원 한도)	총 채불금액에서 대지급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채불금액 (1천만원 한도)
용자상환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동 사업은 2021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수행하던 채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사업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이관하면서 소득요건 제한을

²³⁾ 1천만원 한도

삭제함으로써 용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 용자금액 상향 및 용자요건 완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용자 인원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종전에는 사업주가 체불청산지원 용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매출액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했으나, 2024년 2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개정으로 동요건을 삭제하여 2024년 8월 7일부터 체불사업주가 용자를 쉽게 신청하고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연혁]

시행시기	세부내용
2021.2.10.	- 사업주 용자금액 상향 - 사업주당 7천만원 → 1억원, 근로자당 6백만원 → 1천만원
2021.6.9.	-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제도 이관 및 대상 확대 -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이관 - 소득요건 제한(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을 삭제함으로써 용자대상 확대
2023.7.1.	- 사업주 용자제도 확대 - 용자금액 상향 : 사업주당 1억원 → 1.5억원, 근로자당 1천만원 → 1.5천만원 - 용자요건 완화 : 1년 이상 해당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무관 - 용자기간 확대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2024.1.1.	- 근로자 용자기간 확대 - 1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2024.8.7.	- 용자사유 완화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 용자사유 폐지

* 자료: 고용노동부

〈 체불사업주 용자 활성화 필요 및 용자금 회수 노력 강화 필요 〉

최근 5년(2020~2024)간 체불청산지원 용자 현황을 보면, 2020년 총 192억 4,000만원의 용자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여 2024년 769억 1,800만원의 용자가 집행되고 있어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0~2024년 체불청산지원 용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계		사업주 용자			근로자 용자	
	근로자	용자금액	사업장 수	근로자	용자금액	근로자	용자금액
2020	5,344	19,240	585	5,344	19,240	-	-
2021	7,020	40,979	555	4,178	21,255	2,842	19,724
2022	5,758	33,177	342	2,678	14,259	3,080	18,918
2023	10,120	72,786	482	4,210	25,579	5,910	47,207
2024	10,640	76,918	668	5,695	39,806	4,945	37,112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① 2025년 5월 말 기준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집행 실적이 전년 동기 집행실적과 유사한 추이로 2025년 결산액도 2024년 결산액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고, ②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확정 이후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한시금리인하를 실시할 계획이 있어²⁴⁾ 이에 따른 수요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하여 81억 2,9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2024년 1~5월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집행액은 총 322억 5,400만원

24) 사업주용자 1%p(담보 연2.2%→ 1.2%, 신용·연대보증 연3.7%→ 2.7%), 근로자용자 0.5%p(연 1.5% → 1.0%) 예정

으로, 이 중 사업주용자 170억 4,900만원, 근로자용자 152억 5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 같은 기간에는 총 328억 6,400만원이 집행되어, 전년 동기 집행액 대비 6억 1,000만원(1.9%)이 증가하였음.

[2024년, 2025년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월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합계	6~12월 합계	총계
2024년	4,996	8,290	6,926	5,485	6,557	32,254	44,664	76,918
사업주	1,817	4,628	4,257	2,797	3,550	17,049	22,757	39,806
근로자	3,179	3,662	2,669	2,688	3,007	15,205	21,907	37,112
2025년	6,050	5,534	6,062	8,388	6,830	32,864		
사업주	3,015	3,231	3,721	5,228	4,719	19,914		
근로자	3,035	2,303	2,341	3,160	2,111	12,950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2025년의 집행 추이와 함께 향후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추가 용자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2021년~2024년의 체불청산지원 용자사업 계획 대비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근로자용자의 당초 계획액 대비 결산액의 증감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사업주용자가 각각 당초 계획 대비 △28.3%, △14.6% 적게 집행되었고, 근로자용자는 당초 계획 대비 74.9%, 157.0% 더 많이 집행되었음.²⁵⁾

25)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의 두 유형은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는 국회 예산 심의 시 사업주용자와 근로자용자의 당초 계획액(안)을 구분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받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당초 계획액과 실제 결산시 집행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입장

[사업주·근로자용자별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액 증감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증감률 [(B-A)/A]	근로자 증감률 [(D-C)/C]
	당초 (A)	집행 (B)	(B-A)	당초 (C)	집행 (D)	(D-C)		
2021	18,046	21,255	3,209	5,964	19,724	13,760	17.8	230.7
2022	19,895	14,259	△5,636	10,815	18,918	8,103	△28.3	74.9
2023	29,964	25,579	△4,385	18,369	47,207	28,838	△14.6	157.0
2024	23,535	39,806	16,271	16,655	37,112	20,457	69.1	122.8

이때 정부가 임금등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보다 사업주가 사업주용자를 활용하는 것이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근로자용자를 받았다고 하여 체불임금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므로,²⁶⁾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중 ‘사업주용자’의 집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용자와 달리 사업주용자는 ‘사업주의 자체적인 체불 청산’ 의미가 있어 지속적인 제도 완화를 통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주용자가 사업주의 선택사항인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임.

26) 근로자용자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용자(생계안정목적의 대여)를 실시하는 것인바, 용자 이후에도 근로자는 여전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임.

그러나 임금채불 피해근로자의 조속한 채불임금 청산 필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주용자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사업주용자의 회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사업주용자의 누적 미상환액은 2020년 185억 8,200만원에서 2024년 483억 2,300만원으로 297억 4,100만원(160.1%) 증가하였음.

[사업주용자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용자액	누적 용자액	상환 예정액	누적 상환 예정액(A)	실제 상환액	누적 상환액(B)	누적 미상환액 (A-B)	누적 회수율 (B/A)
2020	19,240	72,856	14,001	39,132	6,285	20,550	18,582	52.5
2021	21,255	94,111	17,058	56,190	9,254	29,804	26,386	53.0
2022	14,259	108,370	19,418	75,608	13,247	43,051	32,557	56.9
2023	25,579	133,949	18,522	94,130	10,974	54,025	40,105	57.4
2024	39,806	173,755	15,698	109,828	7,480	61,505	48,323	56.0

* 자료: 고용노동부

비록 2024년 사업주용자의 누적 회수율(56.0%)이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30.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용자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할 경우 향후 누적 미상환액의 증가가 큰 폭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한 용자 회수를 추진하는 등 미상환 용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보건본부]

(1) 진폐위로금(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131-300)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진폐위로금 지급’(1985년~, 위탁)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①진폐재해위로금, ②장해위로금, ③유족위로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동 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837억 2,500만원 대비 450억 4,900만원(53.8%) 증액된 1,287억 7,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진폐위로금 지급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 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 진폐위로금 지급	86,828	83,725	83,725	128,774	45,049	53.8
· 진폐재해위로금	22,548	28,983	28,983	28,983	-	-
· 장해위로금	22,365	22,546	22,546	67,595	45,049	199.8
· 유족위로금	30,246	32,196	32,196	32,196	-	-

* 자료: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란 8대 광업²⁷⁾ 등에 종사하다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로, 진폐는 요양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 판정시 장해 등급을 결정하고 진폐위로금을 지급함.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²⁸⁾에 근거하여 진폐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고,

장해위로금·유족위로금은 현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지만(2010. 5. 20. 법률 개정, 2010. 11. 21. 시행을 통해 근거규정 삭제), 관련 부칙에 따라 삭제 이전에 장해위로금·유족위로금을 지급받았었거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²⁹⁾.

27) 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

28)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9) 부칙 제1조·제3조 (생 략)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 법원 판결에 따른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신속히 지급할 필요 〉

최근 대법원은 진폐 요양 중 장해 인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장해위로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일은 진폐 진단일이 아닌 그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구체적으로 3심 및 파기환송심³⁰⁾은 ①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1999년에 선고된 바 있는데도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해 왔는데,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한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및 2017. 9.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점, ③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 1.경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④ 이에 따라 피고는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30)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누40266 판결

위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그 지급결정일까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³¹⁾ 본문에 따른 증감을 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음.³²⁾

이후 최초사건과 유사한 후속사건이 대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 패소로 확정³³⁾³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① 현재 평균임금 정정을 이유로 한 소제기 후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장해위로금 49억 1,100만원, ②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 지급 신청건에 대한 장해위로금 401억 3,800만원이 추가적인 진폐위로금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450억 4,9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진폐위로금 산출내역]

- ① 평균임금 정정 소제기 사건에 대한 차액: 4,911백만원
 ⇒ 287명(수급자) × 17,111천원(평균단가)
 * (수급자) 동일한 사례로 소제기 사건 피해자 수
 * (평균단가) 수급자 전체 평균차액 17,111원(4,911백만원÷287명)
- ② 동일한 사례 해당 근로복지공단 접수 건에 대한 차액: 40,138백만원
 ⇒ 2,021명(수급자) × 19,860천원(평균단가)
 * (수급자) 동일한 사례로 공단 접수된 청구 건 피해자 수
 * (평균단가) 수급자 전체 평균차액 19,860천원(40,138백만원÷2,021명)

31)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32) 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누40266 판결 참고

33) 최초 사례에 대하여는 현재 피고(공단) 재상고 중으로 현재 본안심리 중이나, 이후 평균임금 정정에 대한 후속사건들을 보면, 2심에서 최초사건 파기환송심 판결내용과 동일한 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심리불충족 기각되어 공단의 패소가 확정된바 있음.

34) 상고심 총 17건('25.3월 4건, 5월 10건, 6월 3건) 공단패소 확정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진폐위로금 지급 대상자들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0.11.21.) 이전 진폐로 인한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으로, 장해위로금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인바,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및 위로금 차액지급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진폐위로금 차액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추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겠음.

(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2001년~, 출연)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50억원미만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 및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은 현 계획액 4,817억 9,200만원 대비 150억(3.1%) 증액된 4,967억 9,2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		2025년계획			증감	
	계획액	집행액	당초(A)	제1회 변경	제2회 변경안(B)	(B-A)	(B-A)/A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471,792	471,792	481,792	481,792	496,792	15,000	3.1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95,707	95,707	-	-	-	-	-
· 스마트안전장치보급확산	35,000	35,000	-	-	-	-	-
· 안전일터조성지원	-	-	110,707	110,707	110,707	-	-
· 안전동행 지원사업	322,000	321,997	332,000	332,000	332,000	-	-
· 건강일터조성지원	15,825	15,824	35,825	35,825	50,825	15,000	41.8
·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3,260	3,124	3,260	3,260	3,260	-	-

* 자료: 고용노동부

〈 건강일터조성지원 : 국가가 의결한 바에 따른 정확한 집행과 추 가경정예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신속한 집행 필요 〉

해당 증액은 내역사업인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계획액이 358억 2,500만원에서 508억 2,500만원으로 증액된 데 따른 것임.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공학적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지원비율: 50 ~ 70%)하는 사업으로, 지원물류센터(창고)나 생활폐기물 사업장 등 환기장치가 열악하거나 불량하여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내 작업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①환기설비(산업용 냉풍기·제트팬·실링팬)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②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에어컨·산업용 선풍기·그늘막) 구입 비용을 지원하며, 10,000개의 사업장에 ③온열질환 응급 키트(Kit)를³⁵⁾ 보급하는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됨.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 시기 가속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취약근로자가 급증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하여 사업장 수요가 높은 온열질환 예방장비에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³⁶⁾ 내내역사업 중 ‘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35) 구성품 예시 : 쿨매트, 쿨링액, 머리 냉찜질 세트, 식염포도당 등

36)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공통요구자료(Ⅱ-1) P.79

대책 설비 및 시설(에어컨·산업용 선풍기·그늘막) 구입 비용 지원' 계획액을 150억원 증액하였음.

해당 증액분은 상반기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사업」 공모에서 초과 신청으로 지원이 보류된 사업장과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에 지원될 예정임.

다만, 사업 시행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용노동부는 “ ‘25년 온열질환 예방장비 공모 결과 예산(140억원) 대비 197.5%초과 신청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³⁷⁾ 해당 내내역사업인 ‘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에어컨·산업용 선풍기·그늘막) 구입 비용 지원’의 증액안을 제출하였음.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안에 없었던 물품 구매에 집행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계획액 170억원에서 30억을 감액한 140억원만을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의 “2025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배정하도록 하였음.³⁸⁾

해당 계획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미온적이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³⁹⁾ 오히려 집행과정에서 계획과 다르게 감액한 것으로,

37)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공통요구자료(Ⅱ-1) P.80

38) 2025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 시행(기획부-263) 붙임문서 가. 2025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 > 1-2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 나. 목표 > 사업물량 (온열질환 예방장비 140억원, 온열환경 개선설비 20억원)

39)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 검토보고서 P.22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V4P0U9I0D2U1G6J4H6A1Z7O6Z4O2)

이러한 예산 집행은 추경으로 증액한 후 고용노동부가 다른 내역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⁴⁰⁾

[건강일터조성지원 내역사업별 기금계획운용안과 실제 집행지침 비교]

내내역사업명	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 구입 비용 지원		환기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계획 추진지침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계획 추진지침
계획액	170억원	140억원	20억원	
사업장 최대 지원 금액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5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 재구성

둘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환기설비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계획액이 20억원이었으나, 지원 결정금액이 5억 2,900만원에 그침.⁴¹⁾ 해당 내내역사업에 대해서도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옥외작업으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건설업이 제외된 일부 업종의 특정 형태 사업장에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절하

40) 다만, 고용노동부는 온습도계 구매를 위하여 해당 내역사업에서 감액한 30억원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자 사업계획 추진지침을 변경하여 해당 차액을 동 내역사업에 재배정함.

41) 신청 후, 지원결정이 완료된바(2025년 5월말 기준) 해당 설비가 폭염 대비설비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공모를 진행하여도 지원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업명	공모결과(지원결정)		
	사업장수	금액	진도율
온열 설비	42개	5.29억원	26.5%

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⁴²⁾

또한,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8월에 최대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에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6월 공모를 통해 7월 보조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8월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공모 계획이 지체되어 각 사업장에서 설비 및 시설 구비의 차질로 폭염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되므로 공모부터 사업장 선정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월별 발생현황]

(’25년 3월말 승인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6월	7월	8월	9월
온열질환자	63	1	16	37	9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국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별 사업장이 폭염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42)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 검토보고서 P.22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V4P0U9I0D2U1G6J4H6A1Z7O6Z4O2)

